안전한 수출을 위한 무역안보 제도 가이드

무역안보 제도안내

무역안보 구현 준수,
글로벌 신뢰와 안정적인 수출의 시작입니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kasi 무역안보관리원 Korea Trade Security Administration

무역안보제도, 글로벌 비즈니스의 안전판입니다.

무역안보제도는 **글로벌 무역규범**으로 국제 신뢰 확보로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1. 위험 감소 및 안정성 확보

- 무허가 수출입 등 법규 위반 리스크 최소화
- 무역안보 규정 위반에 따른 통관 지연, 선적 거부 등 예방
- 명확한 규제 규범과 국내 법규 준수로 대외 거래의 불확실성 감소

2. 경쟁력 강화 및 신뢰도 상승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시 수출 허가·통관 절차 우대로 시간·비용 절약
-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정
- 무역안보 준수 능력은 무역 파트너 선정 시 우대사항으로 작용

1 무역안보의 기초: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대로 이해하기

안전한 무역을 위한 첫걸음,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무기, 미사일과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을 목적으로 개발·생산·유지되거나 전용 가능 이중용도품목 포함(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설계·개발·생산·사용 등에 필요한 특정기술 정보로서 제공 방식(교육, 컨설팅, 도면 제공 등)과 관계없이 해당될 수 있음

상황허가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려국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3).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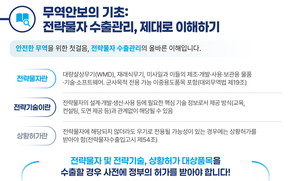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오해

Q. "우리 제품은 무기용이 아니니 괜찮다?"

No! 최종 용도와 무관하게 **품목 자체의 사양**으로 판단합니다.

Q. "오래 거래한 곳이라 문제없다?"

No!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별개로, 품목이 전략물자면 허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No! 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안문판정, 무역안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2 무역안보의 기초: 전략물자 판정 및 우려거래자 확인하기

안전한 무역을 위한 전략물자 판정과 우려거래자 확인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수출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쉽고 정확하게 판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간단 조회:** 로그인 없이 자가판정 키워드 검색 가능
- **서비스 이용:** 자가판정 등록·출력은 및 주요 서비스 이용 시 회원가입 필요
- **기업 인증:** 사업자번호 등로 인증부여를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가판정 Yestrade에서 스스로 간편하게 확인!

판정 주체	수출자
판정 방법	수출품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무역거래자가 직접 판단 *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책임은 자가판정을 수행한 사용자(기업)에게 있음 Yestrade '자가판정' 서비스 활용 - 자가판정 양무 교육 이수 → HSK 변호/품목 키워드 입력 및 질의응답 → 서스템 즉시 결과 확인 및 판정서 출력
판정대상	이중용도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 ** 수출입고서 법률고려품목(품목) 중 최첨부터 해당부터의 자가판정 ** 수출입고서 별표2 무기산업물자 (대상품목)

전문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판정을 무료로 받으세요!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이 어렵거나,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할 때
장점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무료 서비스
신청방법	Yestrade를 통한 간편 온라인 신청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전문기관 판정 결과 회신 * 단, 신청서 보완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우려거래자 확인 Yestrade에서 신속하게 거래관련자 확인!

확인 주체	거래관련자를 가장 잘 아는 무역거래자가 직접 판단 * 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자 포함
확인 목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수출하는 가를 점검하는 절차 필요
확인 방법	Yestrade '우려거래자 검색' 서비스 활용

3 무역안보의 기초: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받기

판정 결과,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거나 **특정 상황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1. 허가별 신청자격 및 대상 품목

허가종류	수출자격		품목요건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중개허가
	개별	사용자포괄				
신청대상	누구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누구나	국제물류주선업자, 운송업자	누구나
수출품	전략품목	전략품목	전략품목	소프트웨어	전략품목, 상황허가 품목	전략품목, 상황허가 품목
인증서명	해외 고객	수출지역	수출지역	해외 고객	해외 고객	해외 고객
제외 수출지역	북	러 우크라 시리아 북 이란 리비아 이라크 아프간	러	북	북	북

- **개별수출허가** | 특정 수출 건에 대한 기본 허가
- **포괄수출허가(사용자/품목)**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기업 대상
- **상황허가** | 비전략물자라도 CWMD 전용 우려, 군/특정국가 품목 수출, 군가역 시 의심 정황(Red Flags) 인지(국제사회 우려거래자 제재에 등록된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
- **경유·환적허가** |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
- **중개허가**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

2.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제54조의2, 제59조의2에 따른 허가 면제 사례도 수출 전 사전기재보고서 또는 수출 후 3개월 이내로 사후기재보고서 제출 필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54조의2, 제59조의2에 따른 허가 면제 사례도 수출 전 사전신고서 또는 수출 후 7일 이내로 사후기재보고서 제출 필요

3. 기술 수출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기술 이전도 허가 필요
- 면제 요건 공개 기술, 기초과학연구, 특허 출원, 합법적 수출용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의(허가 예외)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처벌

전략물자 등을 무허가로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대외무역법 제30조, 제49조)	형사처벌 (대외무역법 제53조 등)
• 3년 이내 전략물자 등 수출입 제한 • 6시간 이내 교육명령 부과	• 7년 이하의 징역 • 해당 물품등 가격의 5배 이하 벌금

불법수출 처벌사례

A사는 상황허가 대상인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러시아로 무허 수출

A사 대표 미국인 공동제재대상자 (SDN)로 지정('23.12월)

출처 | 미 재무부, 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인 1명 포함 (23.12.13 중앙일보)

대량파괴무기로 제조 가능한 공작기계를 중국을 통해 우회 및 북적국 위탁신고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를 위해가 수출

관세청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

출처 | 정밀 공작기계를 러시아로 속여 러시아에 수출한 일당 송치 (25.2.28. 연합뉴스)

B사와 대표 A씨는 수출통제 대상인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자기 판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무허가 수출

기소 전 주범보전 조치 및 재산 기압류

출처 | 세관, 무역안보 상당 반도체등의 불법 수출 사실에 적발

무역안보 이행,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더 쉽고 확실하게!

산업통상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무역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 및 역할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Yestrade)	• 전략물자 자가판정, 수출허가 신청, 우려거래자 검색, 법령/동향 정보 제공 • 과거 위반 자진 신고로 정상참작 기회 제공
전문판정	•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무역안보관리원 전문판정 제공
무역안보 컨설팅	• 전략물자 수출관리 및 무역안보 정책을 이행하려는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
자율준수 역량 강화 (CP 지정)	• 기업 자율 시스템 평가 후 CP 등급 부여 • 수출허가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
무역안보 교육관 (ECLAT)	• 무역안보체도/실무/CP과정 등 온-오프라인 교육, CEO 교육, 임직원 역량 강화 지원
1:1 게시판 (Yestrade)	• 전략물자 판정, 허가, 제도 등 무역안보 전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는 온라인 문의 창구
KOSTI 전략센터	• 기관 대표 홈페이지 문의 창구 (무역안보 제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판정·허가, 교육·컨설팅, 기관 사업 등) (02-6000-6400)
수출통제 한번에스크	• 수출통제 등 긴급 한인 대응 위한 기업 전담 상담 창구 제공 (02-6000-6496~99)

온라인 시스템과 자진신고 활용하기!

복잡한 무역안보 업무, **Yestrade**(yestrade.go.kr)로 쉽고 빠르게!
Yestrade는 무역안보 관련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제공 원스톱 통합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Yestrade 시스템 yestrade.go.kr

- **신속처리** — #전략물자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 **업무 효율 극대화** — #자가판정 도우미 #각종 서식 등
- **실시간 정보 제공** — #해도 변경 안내 #교육 정보 등 각종 공지

무허가 수출 발생시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 허가 대상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했거나, 허가면제에 따른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
· 고의성이 없고,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처분 결정 시 참작 요인으로 고려

언제 신고하나요?

· 수출하기 대상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허가면제 대상이나 사전 사후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내부 감independent 또는 사후 검토 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 허가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수출 전 사전거래보고 또는 수출 후 3개월 이내 사후거래보고 필요

신고 방법

서류 준비 : 자진신고서, 재발방지 계획서 등
준비 서류 : 무역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24호, 제25호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방법 : Yestrade 접속 및 로그인 ▸ 허가신청 ▸ 불법수출 ▸자진신고서 작성·메뉴를 통해 제출

무역안보 최신 동향 안내

무역안보관리원은 **국내외 무역안보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역안보 24 리포트

주요국 무역안보 조치를 신속하게 정리한 속보형 심층 리포트

이슈 분석 리포트

국내외 무역안보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분석 리포트

해외연구동향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무역안보 보고서 요약 리포트

무역안보 현안 정보지 Trade & Security

수출통제 제재 트렌드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정보지

최신동향 뉴스레터 구독 신청

온라인 구독 신청

모바일 구독 신청

참고 **미국의 역외 수출통제제도**
특정 요건 만족시 **제3국 기업**(우리나라 기업 포함)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도 **美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반도록 요구

· (FDP Rule*) 미국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활용해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Foreign Direct Product Rule : 해외직접제품 통제 규정

참고! **FDP Rule 대표적 사례**

- **러시아 FDPR('22.2월)**
  - 특정 미국산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특정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美 상무부 재수출허가 필요
  - ex) 우크라이나 '22.3월 FDPR 면제국(38개) 지위를 획보
- **반도체장비 FDPR('24.12월)**
  - 특정 미국산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특정 반도체장비를 중국, 러시아 또 등 미국의 무기금수국으로 수출할 경우, 美 상무부 재수출허가 필요

· (De-minimis Rule*) 미국산 통제품목(부품 등)이 25% 이상(규맥 기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De-minimis Rule : 최소한입제품 통제 규정
※ FDPR 관련 상세 내용은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 별건자료 참고
[KOSTI 기초자료 제 2025-2호] 미국산 제품에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美 해외직접제품 규칙

전문가 컨설팅 &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기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무역안보 컨설팅(무료)

온라인 신청 (help.yestrade.go.kr) → 신청서 검토 → 전문 컨설턴트 배정 → 일정 협의 → 컨설팅 시행

- **대상 :** 무역안보 관련 문의 애로사항 있는 모든 기업/대학/연구기관
- **주요 컨설팅 내용 :** 전략물자 판정, 제도 이행 지원, 자율준수체제(CP) 구축과 관리
- **문의 :**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실 자율준수팀 (02-6000-6400)

무역안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출자의 무지가 수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출관리 이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무역안보관리원 교육관 ECLAT 웹사이트 접속(edu.kosti.or.kr)" 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참보마당 ▸ 무역안보교육관"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

교육과정	시간	수강료	개최주기	과정설명
전략물자 Basic	1일(4시간)	9만원	월 1회	전략물자 제도 및 판정·허가 실무 기초
전략물자 Pre-master	1일(4시간)	9만원	월 1회	기술 관련 제도 및 판정·허가 실무 심화
판정 Basic	1일(4시간)	9만원	분기 1회	전략물자 판정 실사 및 실습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과정	2일(10시간)	18만원	월 1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심화 과정

운영방식 각 정규교육 과정은 **대면 교육**과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방식으로 개최

- 판정 Basic은 분기별, 대면 교육으로만 개최
- 최소 수강 인원(10명)이 미달되는 경우, 해당 월 교육은 개최 및 수 있음
- 추가로 편성되는 임시과목은 교육 안내 공지 확인 필요

방문교육 사내 임직원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문가 방문**하여 교육 해드립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으로 각종 혜택을!

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더 큰 신뢰와 혜택**을 얻으세요!

자율준수 체제란?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확인 등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수출관리업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제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 점검을 운영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업종 및 규모 등과 상관 없음 등급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 제도

신청 및 지정 절차

· 무역안보관리원이 신청 준비부터 전 과정 맞춤 지원, 기업 부담 경감
· 기업의 자율준수 역량 수준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큰 혜택 제공

CP 지정 시 혜택

· 수출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 개별 수출허가 신청 시 서류 제출 및 심사 절차를 등급에 따라 차등 면제
- AA/AAA등급에게는 여러 건 일괄처리 가능한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 사후거래보고 부담 완화
- 수출허가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시기를 등급에 따라 반기 또는 연간으로 완화